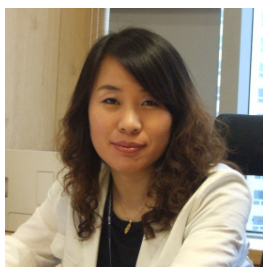


제도
분석

중국 인수합병(M&A) 제도 분석 (5)*

–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관련 세금제도 및
최적 세금설계

연구위원 안유화

T 02)3771-0836

E yuhuaan@kcmi.re.kr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비용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에 따른 거래비용은 인수합병의 전략 설계 시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므로 중국 세금제도에 대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에는 외자의 인수합병과 관련된 전문적이고 통일된 세법이 없다. 그러나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세금징수관련 일반규정(一般規制)과 특별규정(特殊規制)이 있다. 외자가 중국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법문제는 주로 인수합병 산업과 지역, 자본조달 방식, 지불방식, 인수합병과정에 발생하는 각 종 세금, 인수합병 이후의 세무처리, 변경 설립되는 신규기업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세금우대여부 등과 관련된다. 외자의 인수합병에서의 세금설계는 주로 인수목표기업에 대한 설계, 인수기업에 대한 설계, 출자방식의 설계, 자금조달 설계, 인수합병 회계설계 및 주식양도 소득세의 설계 등을 포함한다. 본문에서는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 시 관련되는 세무정책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세무설계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중국세법에서의 외자인수합병 관련 제도정책

중국기업간 인수합병에 대해 중국은 이미 비교적 완비한 세법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외자 인수합병 관련 세법이 없다. 하지만 외자의 인수합병은 중국 국내 기업간의 인수합병과 함께 적용 받는 일반적인 세법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주식인수와 자산인수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세(流转税¹⁾), 소득세(所得税), 행위세(行为税²⁾) 등이다. 따라서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과정에서 준수

*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는 6월호 내용부터 중국에서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와 분석자료를 연재로 제공하고 있음. M&A 관련 거래규정과 절차, M&A 법적 형태와 심사, 자산평가, 세무, 반 독점법 적용, 근로계약과 노사구조, 청산 등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임. 7월호 제도 분석에서는 외자의 중국 인수합병 가능한 투자영역과 전망분야에 관한 분석이 제공되었고, 8월호 제도분석에서는 중국 인수대상기업 종류에 따른 외국투자자의 인수합병 절차 내용이 게재되었음. 9월호는 중국에서의 인수합병 주요방식 및 주의사항에 대한 분석이 제공되었음.

1) 거래세는 국가에서 납세인이 실현한 상품매출액과 서비스영업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함. 상품세(产品税), 증치세(增值税), 영업세(营业税), 특별소비세(特别消费税), 공상통일세(工商统一税) 및 관세(关税) 등을 포함.

2) 행위세는 납세인의 특정행위를 근거로 징수하는 세금을 말함. 일반적으로 국가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행위거나 재원확충을 위한 경우 징수함. 예를 들면 사치성 소비에 대해 오락세(娱乐税)등을 징수하고, 가축도살행



중국 인수합병(M&A) 제도 분석 (5)

제도 분석

해야 할 세법관련 규정에 대해 일반적인 적용규정과 외자인수합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규정》(《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的规定》),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주식인수와 관련되는 세금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外国投资者并购境内企业股权有关税收问题的通知》) 및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에서 공표하는 일반 인수합병과정에 대한 세금관련 규정들은 모두 외자가 중국기업 인수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다. 아래 외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관련 세법규제에 대해 모든 인수합병과정에 적용되는 일반규정과 외자의 인수합병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정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 외자의 인수합병관련 일반규정

외자의 인수합병은 주식인수(股权并购)와 자산인수(资产并购)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2가지 거래와 관련되는 세금종류와 세금비용은 뚜렷한 구별이 있다.

위에 대해 가축세(屠宰税)를 징수함. 인지세도 행위세 일종임.

제도
분석

중국 인수합병(M&A) 제도 분석 (5)

(1) 주식인수합병 세금비용

피인수합병측(지분양도측) 세금비용	인수합병측(지분양수측) 세금비용
(a) 거래세(流转税): 일반적으로 각 종 주식 양도 시 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분양도는 영업세(营业税) 및 증치세(增值税)를 징수하지 않는다. (b) 소득세(所得税): 기업은 지분양도소득에 의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지분양도소득을 기업과세소득액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개인양도주식은 “재산양도소득” 세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 세율은 20%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신《개인소득세 실시조례》(《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에서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규정은 국무원재정부문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 시행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역외 인수합병측이 증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중국 국내기업을 합병한 경우 피인수합병측(인수합병 목표기업)은 기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c) 인지세(印花税)³⁾: 인지세 세율은 0.05%이다.	인수합병측이 기업소득세 납부주체인 경우, 장기 주식투자(长期股权投资) 시 발생하는 차이와 관련된 세무처리 문제가 존재한다. 인수합병측의 인수합병 주식원가는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며, 투자 당기년도 비용으로 직접 공제해서도 안된다. 오직 지분양도하거나 처리 시 발생하는 수입이나 손실에 대해서만 재산 양도소득 혹은 손실로 세금처리 할 수 있다.



3) 인지세는 각종 경제활동중에서 재산권(財産權)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

중국 인수합병(M&A) 제도 분석 (5)

제도 분석

(2) 자산인수합병 세금비용

피인수합병측(자산양도측) 세금비용		인수합병측(자산양수측)세금비용
유체동산(有體動産 ⁴⁾) 양도 관련 증치세와 소득세	부동산, 무형자산(無形資産) 양도관련 영업세와 토지증치세	
(a) 일반적으로 납세인이 유상으로 유체동산 중의 비고정자산(예: 재고, 저가소모품) 및 미사용 고정자산의 소유권 양도 시, 피인수합병 자산에 적용되는 법정세율(17% 혹은 13%)에 따라 납입 증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b) 소규모 납세인이 유상으로 유체동산 중의 비고정자산(예: 재고, 저가소모품) 및 미사용 고정자산의 소유권 양도 시, 법정세율(현 3%)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인수합병 자산이 소비세 과세 제품인 경우, 법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c) 유체동산 중 기사용 고정자산을 유상으로 양도 시, 《증치세 관련 징수정책 관련 국가세무총국의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합(2009) 90호문⁵⁾), 《부분 화물 적용 증치세 저세율과 간편방법으로 증치세 징수정책에 관한 통지》(재산세(2009) 9호⁶⁾) 및 《전국적 증치세 전환개혁 약간 문제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산세(2008) 170호⁷⁾)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증치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a) 유상으로 무형자산 소유권 양도 시 5%의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b) 유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양도(부동산 판매와 동일행위 포함) 시, 5%의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인수합병측이 부동산, 무형자산으로 지분투자하여 인수합병측의 이익 분배, 투자위험을 공동부담할 경우, 영업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c) 피인수합병측이 외상투자기업이 아닌 경우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의 부가세(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부가)도 납부하여야 한다. (d) 인수합병측 토지사용권 혹은 부동산 양도의 가치증가 부분에 대하여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 세관 감독관리 기간내에 자신의 명의로 면세받고 수입한 설비를 양도할 경우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f) 인수합병과정 중 발생하는 관련 인지세 과세 증빙서류(예, 화물매매계약, 부동산/무형자산 재산권 이전 서류 등)는 법정세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g)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양도수증한 비화폐자산 외 기타 자산의 양도수익은 피인수합병측의 당기과세 소득액으로 분류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h) 기업전체 자산양도는 원칙상에서 거래발생 시 '공정가치로 전체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와 투자활동 진행' 두 경우로 나누어 세무 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소득 혹은 손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a) 중국에 있는 외상투자기업이 자산인수합병 주체가 될 경우, 주로 인수합병자산 가격계산과 관련된 세금문제만 존재한다. (b) 외국 기관투자자가 인수합병자산을 재양도할 경우 거래세와 원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c) 외국개인투자자가 인수합병자산을 재양도할 경우 거래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d) 인수합병과정 중 발생하는 관련 인지세 과세 증빙서류(예, 화물매매계약, 부동산과 무형자산양도계약 등)는 법정세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4)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지칭
- 5) 《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简易征收政策有关管理问题的通知》(国税函(2009)90号文)
- 6) 《关于部分货物适用增值税低税率和简易办法征收增值税政策的通知》(财税[2009]9号)
- 7) 《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全国实施增值税转型改革若干问题的通知》(财税(2008)170号)

제도
분석

중국 인수합병(M&A) 제도 분석 (5)

2) 외자의 인수합병 관련 특별규정

(1) 세법이 인수합병 목표기업의 선택에 주는 영향

외자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등에서는 다른 산업, 다른 지역, 경영성과가 다른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차별 세금대우를 실행하도록 규정한다. 전체적인 인수합병전략을 수립할 경우 세법측면에서 최대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합병 목표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인수합병 후 변경 설립한 기업세수 신분의 확정

납세인은 세금 징수 법률관계의 기본요소이다. 납세인의 세법신분은 납세인의 세금 적용종류, 세율과 세금우대 등을 결정한다. 인수합병 쌍방은 납세인 신분에 대한 설정과 변경을 통하여 납세계획을 세워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 신분에 대한 확정은 일반적으로 외자비율이 25%를 기준으로 한다. 외자비율이 25%보다 낮은 회사도 외상투자기업이지만 세금대우는 《외상투자기업심사비준, 등기, 외환 및 세수관리에 관한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外商投资企业审批, 登记, 外汇及税收管理有关问题的通知》)의 규정에 따라 투자총액 항목하의 사용설비나 물품 수입비용은 감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타 세금항목에 있어서도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받지 못한다.

2. 외자의 인수합병에 대한 세무설계

1) 인수목표기업 세무설계

목표기업에 대한 선택은 인수전략의 중요내용이다. 목표기업을 선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세무관련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무설계를 할 수 있다.



중국 인수합병(M&A) 제도 분석 (5)

제도 분석

목표기업 업종	목표기업 유형	목표기업 재무상황	목표기업 소재지
목표기업 업종이 다름에 따라 인수합병 유형, 납세주체 속성, 납세절차 및 세금 종류도 다르다. (i) 만약 수평인수합병을 선택한다면, 인수합병 후 기업의 경영업종이 불변하므로 일반적으로 인수합병기업의 납세 종류와 납세절차가 변하지 않는다. (ii) 만약 수직인수합병을 선택한다면 인수합병기업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공급상에게서 구매하거나 고객에게 판매하던 것이 기업내부의 구매, 판매행위로 변경 되었고, 증치세 납세절차가 없어진다. 목표기업의 제품과 인수합병기업의 제품이 다르기에 수직인수합병은 해당 납세주체의 속성이 변할 수 있고, 납세 종류와 납세절차가 증가될 수 있다. (iii) 만약 인수합병기업이 기존 업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업종의 기업을 목표기업으로 선정할 경우 혼합인수합병이며, 해당 인수합병을 목표기업이 처한 업종으로 보며, 이는 인수합병기업의 납세주체 속성, 납세 종류와 납세절차에 영향을 준다.	목표기업은 그 특성에 따라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으로 나뉜다. 중국세법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세금징수에 대하여 차별화를 실시하며, 세금 종류와 세율 모두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외자기업은 도시유지건설세(城市维护建设税), 교육비부가(教育费附加) 등 세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자기업 투자한도 내에서 수입설비 면세 등 혜택을 주어 투자를 격려한다.	만약 인수합병기업의 이익이 비교적 크다면, 전체적인 납세지위를 변경하기 위하여 순경영 손실이 큰 기업을 목표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이익과 손실의 상각(相互抵消)을 통하여 기업소득세의 전체적인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합병납세 중 손실이 발생하면 인수합병기업은 손실이연을 실현할 수 있으며 소득세 납부를 지연시킬 수 있다.	중국은 경제특별구나 중서부지역에 등록된 기업(中西部地区注册经营的企業)에 대해 일련의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한다. 인수합병기업은 이런 우대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수합병기업이 세금우대정책 적용을 받도록 설계할 수 있다.



2) 인수합병기업 세무설계

외자 인수합병시 소득세의 전체적인 납세부담 설계에 있어서 중국 역외투자자는 중국과 이중 세금징수 협정이 있는 국가나 지역의 기업측을 인수합병주체로 선정해야 한다. 그것은 중국과 세금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기업의 경우 중국기업 투자시 취득한 배당금 소득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중국 역내 투자자가 세금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는 기업집단의 경우 특히 중요한데 그룹소속 계열사들은 인수합병시 글로벌 범주에서 세금설계를 고려해야 함을 말한다.

제도
분석

중국 인수합병(M&A) 제도 분석 (5)

3) 출자방식 세무설계

외자인수합병은 출자방식에 따라 주식인수합병 (現金购买股票式并购), 자산인수합병(現金购买资产式并购), 주식교환 인수합병(以股票换取股票式并购)과 기타 출자방식의 인수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 서로 다른 출자방식하에서의 세금비용은 모두 다르기에 꼼꼼히 따져보고 합리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

4) 인수합병 자금조달 세무설계

각 국 세법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기업이 세금감면 효과를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인수합병 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업 자체의 재무레버리지를 적절히 하여 될수록 부채로 조달하여 더 많은 이자절세효과를 보도록 설계해야 한다.

5) 인수합병 회계 세무설계

기업의 인수합병 행위에 대하여 각 국 회계기준은 일반적으로 권익합병법(权益合并法)과 구매법(购买法) 두 가지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세금납부 측면에서 보면 구매법은 납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역할이 있다. 그것은 구매법은 인수합병 행위 발생 이후의 구매가격을 반영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증가된 기업자산에 대해 시장가치에 근거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하므로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역할이 있다.

6) 주식양도 소득세 세무설계⁸⁾

기업주식양도 행위에 대한 세금징수의 기본적인 문제는 배당금 소득과 주식양도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고 서로 다른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액은 기업이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할 수

8) 자산인수와 관련되는 세금종목이 비교적 복잡하기에 자산인수를 통한 방식의 수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본 문에서는 주식양도 소득세에 대한 세무설계만 다루기로 함

중국 인수합병(M&A) 제도 분석 (5)

제도 분석

있다. 그러나 주식양도 소득세는 양도수입에서 투자원가를 뺀 차액을 과세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업소득세로 납부한다. 《기업의 주식투자업무에 관한 약간의 소득세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0]118호)⁹⁾에서는 “기업의 주권투자에 따른 소득은 기업이 주권투자의 경우 발생하는 (회수, 양도 및 청산처리로 인한) 수입에서 주권투자 원가를 뺀 차액이다. 기업의 주권투자에 따른 소득은 기업의 과세 소득액에 기입하여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세금 계산방법은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설계가 필요함을 말한다.



《기업 주식양도에 관한 소득세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국세합[2004]390호¹⁰⁾)에서는 (i) 기업의 일반적인 주식에 대한 매매는 국세발[2000]118호 관련규정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양도인은 할당받은 피투자기업의 누적미분배이익 및 누적잉여금¹¹⁾을 주식양도 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배당소득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기업이 전액 출자한 회사 및 95%이상의 지분소유 기업을 청산 혹은 양도 시 투자측은 피투자측의 누적미분배이익과 누적잉여금을 투자측의 배당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세후 중복 세금 징수가 기업의 개편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측의 주식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수입 중 배당소득을 빼도록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내자기기업의 주식양도와 관련된 기업소득세는 피인수합병측(주식양도측)이 목표기업의 95%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한 주식양도측의 인수합병 목표기업의 잔여수익(누적미분배 이익 및 누적잉여금)은 주식양도 소득으로 분류하여 주식양도인의 과세 소득에 넣어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 여기에서 가능한 절세방법은 외자가 인수합병 전, 인수합병 목표기업이 주식양도 계획측(기업)에 배당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식 양도측의 소득세 납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주식양도인의 과세액을 줄일 수 있다. 주식양도인이 개인일 경우, 신《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에서는 “주식양

9)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股权投资业务若干所得税问题的通知》(国税发[2000]118号)

10)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股权转让有关所得税问题的补充通知》(国税函[2004]390号)

11) 留存收益, 即累计未分配利润及累计盈余公积

제도
분석

중국 인수합병(M&A) 제도 분석 (5)

도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방법에 대하여 국무원 재정부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고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주식양도 소득에 관한 개인소득세의 최신 입법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충 설명할 내용은 인수하는 목표기업이 외자기업일 경우(이 경우 외자의 인수합병 범주에 속하지 않음) 《외상투자기업의 합병·분립·주권조정·자산양도 등 구조조정업무와 관련된 소득세처리에 관한 잠행규정¹²⁾》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신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이 나온 후 이 잠행규정의 효력에 대해 명확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적용이 다르다. 따라서 반드시 목표기업 소재지 세무주관부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인수기업(지분양도측)에서 향유해야 하는 누적미분배이익 및 누적이익잉여금은 주식양도 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적 조항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2)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分立、股权重组、资产转让等重组业务所得税处理的暂行规定》